

#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0월 29일 김원재 의원등 21인 의원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2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12월 11일) 상정
- 제14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12월 11일) 수정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김원재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- 가임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 여성에 대하여 보건기간 중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“가임기 여성”을 1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으로 정의함.(안 제3조 제16호 신설)

나. 부천시가 관리·운영하는 수영장의 여성 수영회원 중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6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 제3항 신설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임기 여성을 15세이상~49세이하로 하는 것은 폭이 너무 좁지 않은가?</li> <li>○ 6% 감면 규정은 적정한가?</li> <li>○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직데이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무료입장권을 주는 것이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?</li> <li>○ 일부 시·군에서 13세이상~55세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연령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가?</li> <li>○ 조례상 가임기여성이외의 이용자가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진단서, 소견서를 매월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, 진단서 발급비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가임기 여성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모자보건법상 연령을 준용함.</li> <li>○ 타 시·군도 보통 6~10%인데 이용자수, 감면료 등을 감안하여 6%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음.</li> <li>○ 모든 대상자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임.</li> <li>○ 연령 조정은 가능하다고 봄. (체육청소년과장)</li> <li>○ 매직데이가 아닌 여성도 감면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으나, 제한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. (체육청소년과장)</li> </ul>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### 5. 심사결과 : “수정의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195호
의결 연월일	2007. 12. 21 (제140회)

제안년월일 : 2007년 12월 11일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가임기 여성의 연령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그 폭을 넓힘.
- 조례상 가임기 여성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회원이 감면을 받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함.

## 2. 주요골자

- 제3조 제16호를 삭제함.
- 체육시설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수영장 월 사용료를 6%이하로 감면할 수 있도록 가임기 여성의 연령범위를 넓히고, 실효성이 없는 진단서와 소견서 제출 규정을 삭제함.(안 제11조 제3항)

##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중 제16호를 삭제한다.

안 제11조 제3항중 “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”을 “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조례안과 동일함.』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~15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3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~15. (생략)</p> <p><u>16. 가임기 여성이라 함은 15세이상 49세이하 여성을 말한다.</u></p>	<p>제3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~15. (생략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
<p>제11조(사용료의 감면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1조(사용료의 감면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<u>③ 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중 수영장 월 사용료를 100분의 6이하로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1조(사용료의 감면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<u>③ 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중 수영장 월 사용료를 100분의 6이하로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	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[수정안 포함]

## **부천시 체육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부천시 체육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“제11조제3항”을 “제11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중 수영장 월 사용료를 100분의 6 이하로 감면할 수 있다.

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